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6. 5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6. 5

다. 상 정 일 자 : 2006. 6. 15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가. 제안사유

○ 2006. 7. 1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과 관련, 사회복지분야 담당인력의 증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실시,「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등 토지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의 보강 및 2008년부터 시행계획인 사업별예산제도의 준비인력 등 증원인력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

○ 기능직공무원 결원 및 업무여건을 감안, 일부사무의 담당공무원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 간 정원조정 시기별로 부칙에 명시하였던 직급별 한시정원을 별표 2로 일괄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조정 : 710명 ⇒ 721명 ▷ 증 11명(안 제2조)

- 증원내역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인력 8명, 사업별예산편성 인력보강 1명, 토지관련업무증가 인력보강 2명

○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 : 695명 ⇒ 706명 ▷ 증 11명(안 제2조제1호)

○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구본청 : 484명 ⇒ 474명 ▷ 감 10명

· 동 : 147명 ⇒ 168명 ▷ 증 21명

- 직급별 정원

· 일반직 6급 : 114명 ⇒ 117명 ▷ 증 3명

· 일반직 7급 : 175명 ⇒ 178명 ▷ 증 3명

· 일반직 8급 : 187명 ⇒ 191명 ▷ 증 4명

· 일반직 9급 : 83명 ⇒ 85명 ▷ 증 2명

· 기능직10급 : 48명 ⇒ 47명 ▷ 감 1명(일반직으로 직종전환)

○ 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2로 명시(안 제3조의 2)

-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인력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7.12.31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필요(붙임 비용소요 축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6. 5. 18 ~ 6. 2(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마. 관련지침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1, 2005.4.22)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612, 2005.5.12)

○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509, 2005.9.29)

○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652, 2005.9.20)

○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985, 2005.12.28)

○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2, 2006.1.19)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428, 2006.4.19)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추진되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이 2006. 7. 1부터 동으로 일부 업무가 환원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담당인력이 8명 증원되고, 부동산 실거래의 신고의무제가 실시되므로 인력보강 2명이 늘어나며, 2008년부터 시행계획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준비인력이 1명 보강되고, 기능직공무원 1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서

○ 정원 총수를 710명에서 721명으로 11명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구본청은 10명이 줄어들고 동은 21명이 늘어나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은 3명 늘어 117명, 일반직 7급은 3명 늘어 178명, 일반직 8급은 4명 늘어 191명, 일반직 9급은 2명 늘어 85명, 기능직10급은 1명 줄어 47명입니다.

○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예산과 관련있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